-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 -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2511

2018년 6월 19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6월 1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1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28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교통위원회(2018년 6월 1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)

가. 제안이유

○ 2018년 1월 10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 조항 중 조합회의 구성 인원 변경(21인→22인) 개정(안)에 대하여 차기 조합회의 시 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음.

○ 이는 조항 내용과 조항 명칭을 일치시켜서 조합규약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수도권교통 조합규약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동수)

가. 동의안의 개요

○ 동 동의안은 현행 수도권교통 조합규약 제3조의 제목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변경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및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임

※ 참고 :「지방자치법」관련 규정

> 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- 후략 -
> 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.

나.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

○ 현재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는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에 따라 “수도권교통본부”를[1] 설립하여[2] 운영하고 있으며,

동 본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고자 2005년 2월 『수도권교통조합 규약』을 제정한 바 있음

○ 본 동의안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6조 중 조합회의 구성 인원

1) 설립당시의 명칭은 “수도권교통조합”이었으나 3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규약변경을 통해 2007년 9월 “수도권교통본부”로 명칭을 변경하였음
2) 3개 시도의회의 의결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2005년 2월 수도권교통조합이 설립됨

변경에 대한 건[3]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방침에 제3조 조항 명칭을 “조합의 구성”에서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개정하라는 조건부 사항[4]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3)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(의안번호 2143)
- 제안일 : ’17.10.16 - 본회의 의결 : ’17.12.20(원안가결)
- 주요내용 :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**교통관련 전문가 위원수를 1인에서 2인으로 증원**

4)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-275(2018.10.)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에 대한 동의안

의 안 번 호	2511

제출년월일 : 2018년 6월 1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2018년 1월 10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제6조(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) 조항 중 조합회의 구성 인원 변경(21인→22인) 개정(안)에 대하여 차기 조합회의 시 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음.

나. 이는 조항 내용과 조항 명칭을 일치시켜서 조합규약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수도권교통조합 규약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교통정책과 교통기획팀 장재완 (☎ 2213-2219)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 개정(안)

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조항 명칭 “조합의 구성”을 “조합의 구성 및 의무”로 한다.

부 칙(2018. .)

이 규약은 서울특별시의회, 인천광역시의회,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**행정안전부**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조합의 구성) ① 조합은 서울특별시 ·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(이하 "조합원"이라 한다)를 구성원으로 한다. ② 대상지역은 조합원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 ③ 조합원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과 조정·협조 요청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2.2.>	제3조(---------- 및 의무) ① (개정 전과 같음) ② (개정 전과 같음) ③ (개정 전과 같음)